

< 수시 공시 >

2020.10.28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 제 19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3 조 제 4 호)에 의거하여,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해지됨을 안내드립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펀드명	
1	신영밸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

2. 상세 내역

펀드명(운용펀드)	펀드명(투자자펀드)	운용펀드코드	투자자펀드코드	발생일자	비율산정대상펀드구분
신영밸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운용	신영밸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C 형	KR5209665276	KR5209AR6379	2019-04-27	산정대상
신영밸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운용	신영밸류 3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C-P2 형	KR5209665276	K55209BG3046	2019-04-27	산정대상

3. 해지 사유 : 소규모펀드 임의 해지(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)

4. 해지 일자 : 2020년 11월 27일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